

인천광역시서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http://www.seo.incheon.kr/>

선	기관위원장
람	

제1489호 2020. 1. 20(월)

차 례

고 시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17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고시 ----- 1

공 고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102호 도시관리계획(원당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입안
(안) 공고·열람(안) ----- 5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20-17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5항, 제23조 제4항, 제24조제1항, 제25조제2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변경·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 1. 20.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부여·변경·폐지 도로명주소 : 인천 서구 가재울로 119 외 10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부여(변경·폐지)사유	도 로 명 고 시 일	도 로 명 부 여 사 유
		별 도 열 람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서구청 토지정보과(☎560-4830)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9.01.20일자로 고시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 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조서

고시일 : 2020-01-20

연번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1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524-10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울로 119 (가좌동)	20090706	가좌가 많은 겨울/시내를 의미하며, 가좌동의 어원이 된 말을 인용하여 제명	
2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212-8, 212-9, 212-10, 212-11	인천광역시 서구 원제로 63 (가좌동)	20090706	도로가 관통하는 원적신의 이름을 인용하여 제명	센트럴시티류
3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582-37, 582-38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로 79-5 (석남동)	20090922	도로가 지나는 석남동이 동명을 따 명명 및 석남면의 남쪽에 있는 마을이라는 뜻	
4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8-42	인천광역시 서구 청서로 33-1 (청라동)	20101111	청라대로 서쪽에 위치	
5	인천광역시 서구 당라동 779-4	인천광역시 서구 독정로 44-4 (당라동)	20110707	인근 자연부락인 "독정마을"의 이름을 반영	인천서희학교
6	인천광역시 서구 태극동 95-6	인천광역시 서구 도곡로 172-2 (태극동)	20130730	도지울이라고 불리던 옛지명 활용	
7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0	인천광역시 서구 가천로117번길 60 (마전동)	20081231	가천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170m 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8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29-10	인천광역시 서구 비자니스로194번길 4-14 (청라동)	20101111	도로의 기점이 접한 대로, 로의 기초번호로 도로명부여	
9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29-10	인천광역시 서구 비자니스로194번길 4-16 (청라동)	20101111	도로의 기점이 접한 대로, 로의 기초번호로 도로명부여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폐지고시조서

고시일 : 2020-01-20

연번	도로명주소	폐지 사유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1	인천광역시 서구 탁곡로33번길 18 (삼곡동)	건축물 대장 말소	20090922	탁곡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33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2	인천광역시 서구 탁곡로51번길 13-18 (삼곡동)	건축물 대장 말소	20090922	탁곡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51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20-102호

도시관리계획(원당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입안(안) 공고 · 열람(안)

도시관리계획(원당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입안(안)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미리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1. 20.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I .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변경 없음)
2.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변경 없음)
3. 도시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변경없음)
4.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변경)
 - 1) 아파트용지(D-1 용도)

기 정						변 경					
도면 표시	가 구 번 호	면 적 (㎡)	획 지		비 고	도면 표시	가 구 번 호	면 적 (㎡)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					위 치	면 적(㎡)	
D-1	53-1	33,749.1	1	520.6		D-1	53-1	33,749.1	1	520.6	
			2	570.9					2	570.9	
			3	200.2					3	200.2	
			4-1	4,009.6					4-1	4,009.6	
			4-2	5,540.6					4-2	5,540.6	
			5	3,347.5					5	3,347.5	
			6	2,725.2					6	2,725.2	
			7	778.4					7	778.4	
			8	1,157.9					8	1,157.9	
			9	14,898.2					9	10,222.05	
				10	4,676.15						

○ 변경 사유서

변경 내용	결정 사유
•9획지를 분할하여, 10획지 신설	•9획지 공동주택용지 일부가 시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가 대상구역(풍산김씨 종중묘)에 위치하여 문화재관리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별도의 획지 부여

5.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변경없음)

6.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변경)

○ 교통처리계획: 차량출입허용구간 변경

【기정】

【변경(안)】



[별표 1] 건축물 용도 분류표

○ 기정

구분	허 용 용 도	불 허 용 도	건폐율 (%이하)	용적률 (%이하)	높이
D-1	• APT 및 부대복리시설 (주택법 적용)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30	250	20층이하

주) B-1 용도에서 단독주택 건축시는 A-2의 지구단위계획 내용 준용

○ 변경

구분	허 용 용 도	불 허 용 도	건폐율 (%이하)	용적률 (%이하)	높이
D-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PT 및 부대복리시설 (주택법 적용)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제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30	250	20층이하

주) B-1 용도에서 단독주택 건축시는 A-2의 지구단위계획 내용 준용

D-1 용도에서 허용용도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제실)은 53-1가구 10획지에 한하고, 53-1가구 10획지의 허용용도는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제실)에 한함.

○ 변경 사유서

결정 내용	결정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동주택용지에 용도 추가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제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53-1가구 9획지 공동주택용지 일부가 시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가 대상구역(풍산김씨 종중묘)에 위치하여 문화재관리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허용가능한 건축물용도 부여

II. 열람기간 및 의견제출 방법

1. 열람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
2. 의견제출: 도시관리계획안의 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작성하여 열람 장소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III. 열람장소

- 인천광역시 서구청(도시개발과, 032-560-5774, 서구 서곶로 307)

IV. 관계도서: 게재 생략(열람 장소에 갖추어 둠)

의견서

일 시	2020. . .
성 명	
주 소	※ 회신가능한 주소를 정확히 기재 바랍니다
연 락 처	※ 회신가능한 연락처를 정확히 기재 바랍니다
도시계획 변경사항	도시관리계획(원당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의견사항	
※ 의견사항에 대한 사유를 정확히 기재 바랍니다.	